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 방안

조재린·김해식



목 차

I. 보험산업 규제환경 변화

II. 보험회계기준 개정안

III. RBC 가용자본

IV. 부채평가 할인율

V. 정책 제언



I. 보험산업 규제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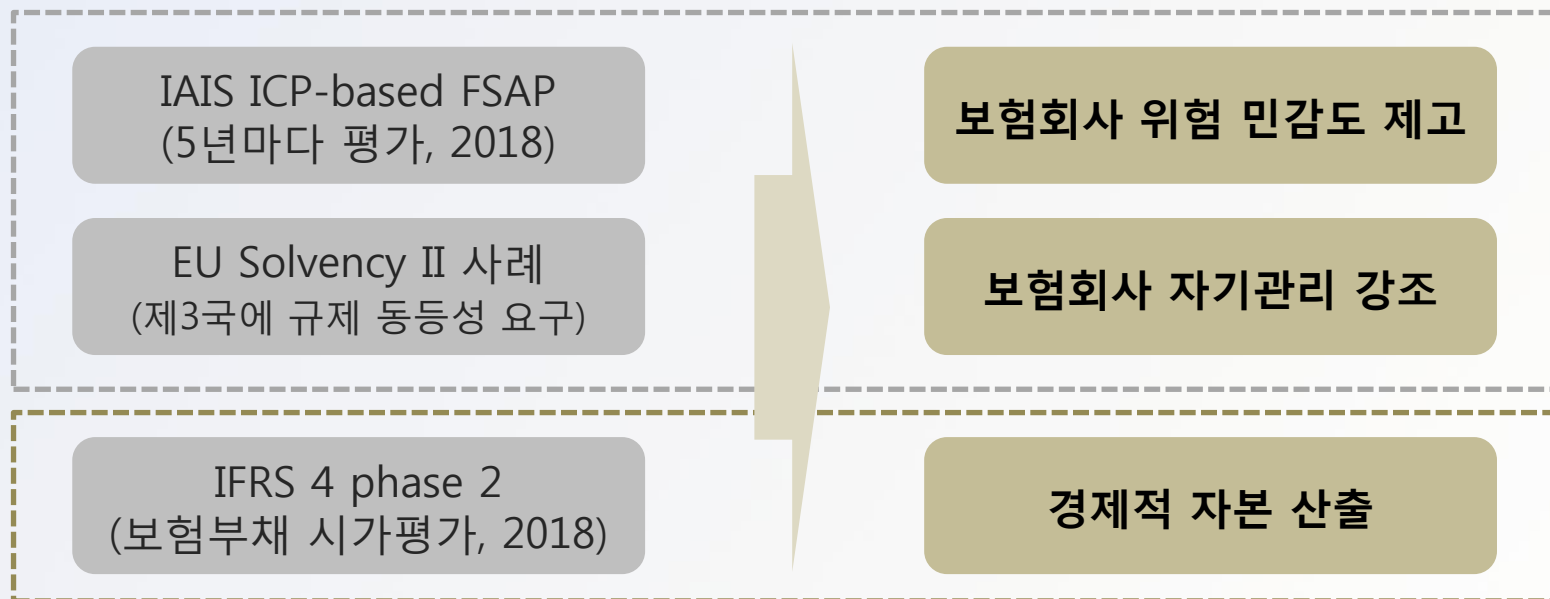


1.1.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요구



◆ 보험회사의 경제적 자본 산출과 위험에 대한 자기 관리 강조

- 건전성 규제는 경쟁을 촉진하고 보험금지급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
- 위험 측정 정교화, 보험회사의 위험민감도 제고 및 자기관리 강조



1.2.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로드맵



◆ 2014년 7월 확정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1. 정량평가 (pillar 1)					
신뢰수준 상향	보험/금리위험	신용위험 50%	신용위험 100%		
상관계수		시행			
연결 RBC	시범운영	시행			
변액보증위험헤지	방안수립	시행			
장수위험		방안수립			시행
부채듀레이션		방안수립	단계적 시행		
운영위험		방안수립	시행		
내부모형		방안수립	시범운영	시범운영	시행
자본확충인센티브		방안수립	시행		
2. 정성평가 (pillar 2)					
ORSA		시범운영	시범운영	시행	
3. 시장공시 (pillar 3)					
공시제도	방안수립	시행			
4. 보험부채 시가평가					
IFRS4 phase2	도입 준비				시행
LAT	단계적 시행				폐지
장기보험 IBNR	단계적 시행				
변액보증준비금	시행				

자료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1.3. IFRS와 RBC 연계 방안 필요



◆ 보험부채를 어떻게 시가 평가할 것인가?

- 금융감독당국, 현재 T/F 운영 중
- 재무건전성 감독 관점에서 할인율 등에 대한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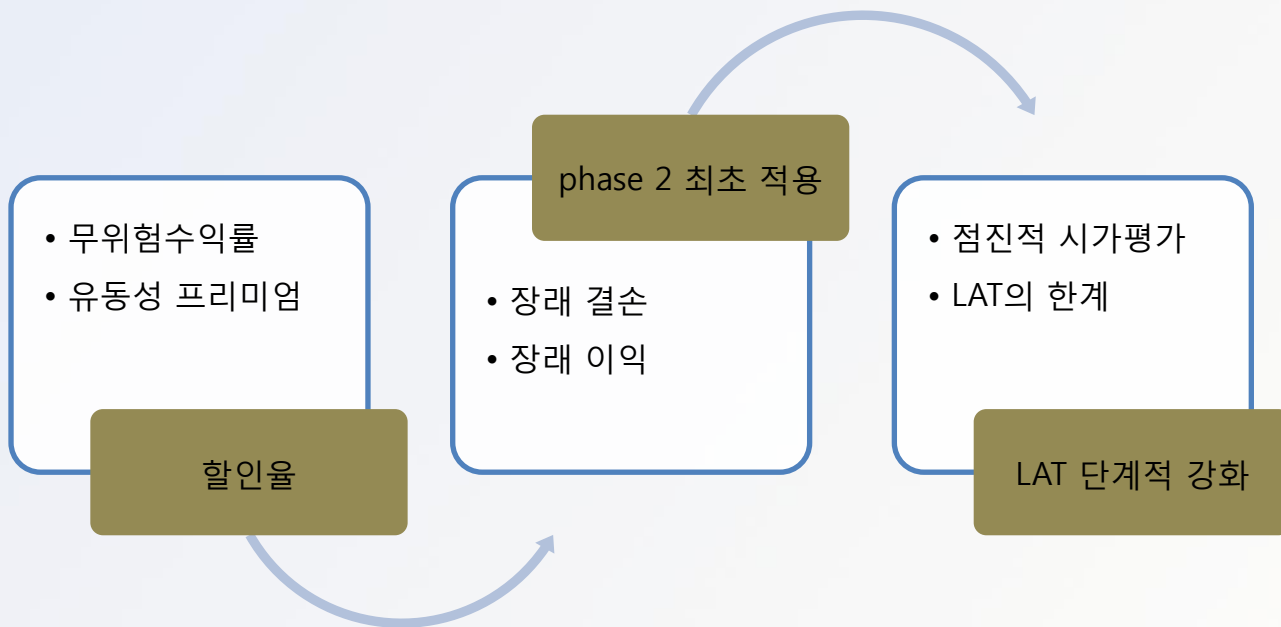
◆ 시가평가 결과를 RBC 가용자본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phase 1 평가는 순 손실만 인식하며, RBC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 phase 2 회계처리를 RBC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의 영향 평가 필요

◆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세부 논의 필요

- 시가평가 경험과 시스템 등 인프라 부족에 따른 시행착오 최소화 방안

Ⅱ. 보험회계기준 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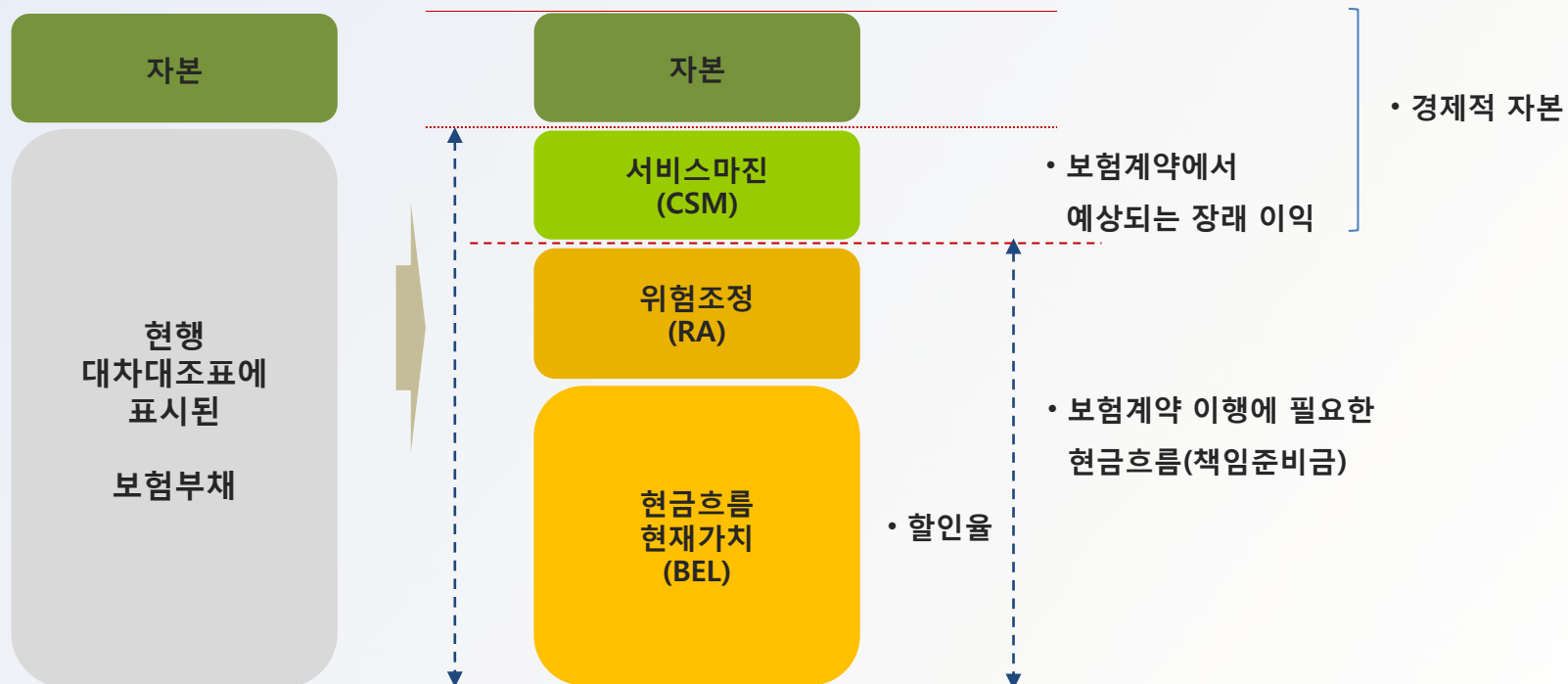


2.1. 보험회계기준 개정안(IFRS4 phase2)



◆ 보험회계기준 개정안은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요구

- 포트폴리오 단위로 보험부채를 측정
- 보험회사의 경제적 자본은 순자산과 서비스마진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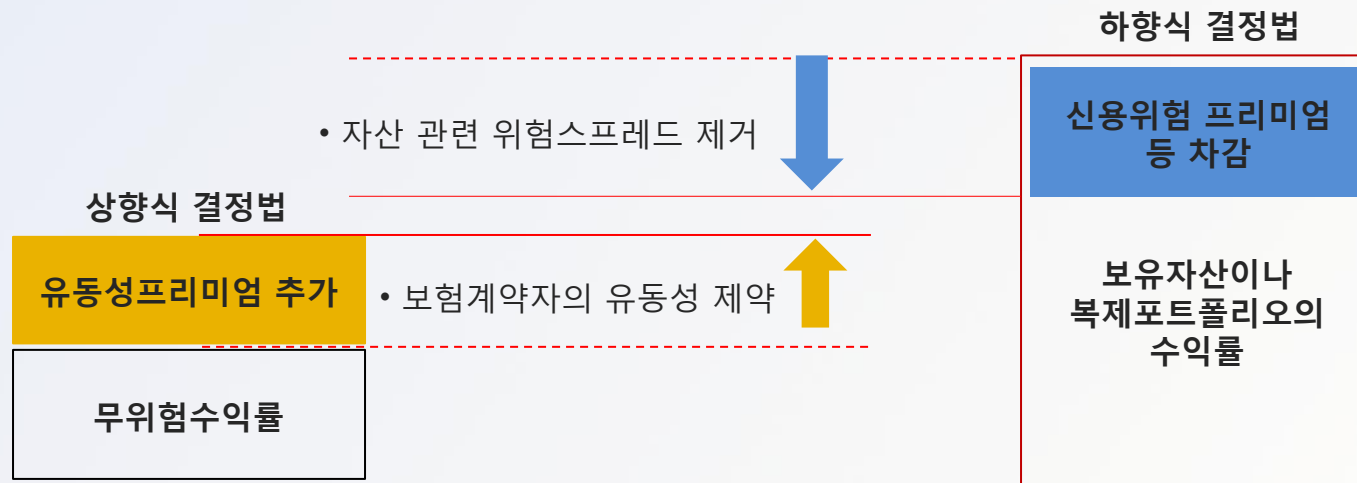


2.2. 할인율이 하락하면 보험부채 증가



◆ 할인율 하락은 보험부채 증가로 자본 감소를 초래

- phase 2의 할인율은 현행 자산운용수익률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 유동성프리미엄 수준에 따라 할인율 하락 정도가 달라질 것임



◆ RBC와 관련하여 할인율 급락에 대비한 감독수단을 마련할 필요

- 무위험수익률 급락에 대비한 할인율 조정수단 필요

2.3. 개정안 최초 적용 : 보유계약의 결손



◆ 보유계약에서 예상되는 손실은 자본 감소를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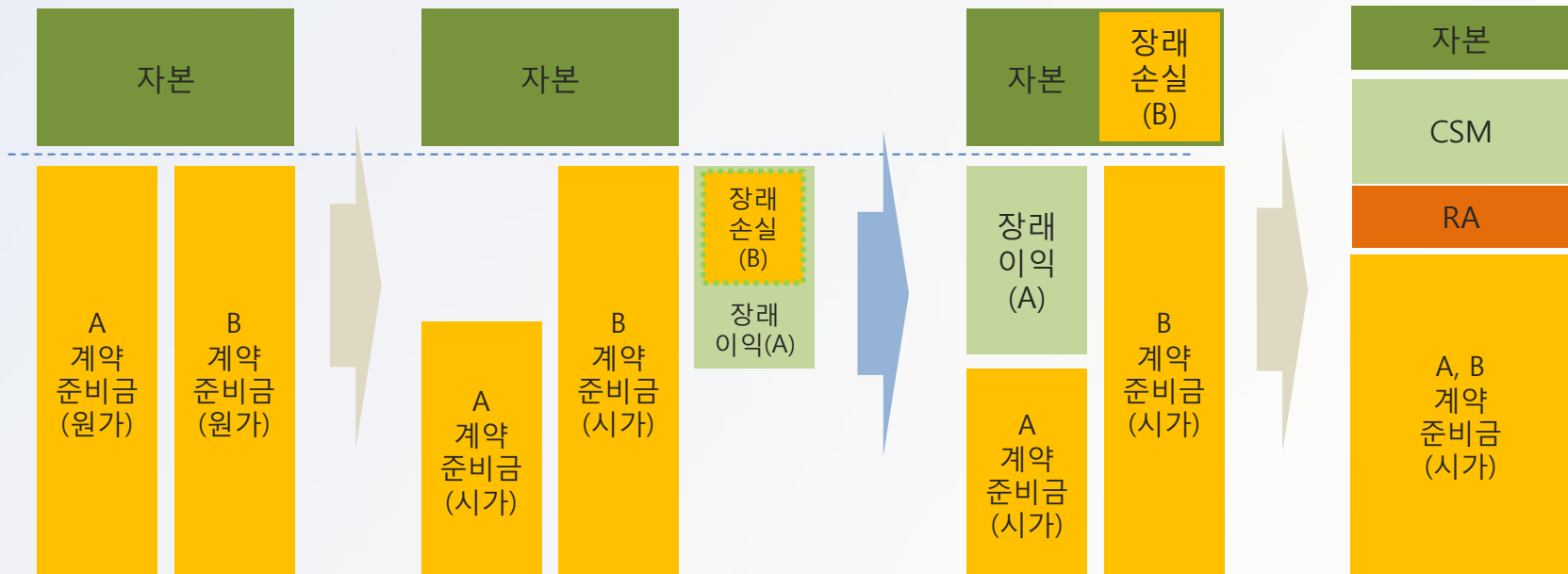
- 장래 이익($CSM > 0$) 예상 시, 부채에 표시 후 보장기간에 걸쳐 이익 인식
- 장래 손실($CSM < 0$) 예상 시, 준비금 추가 적립을 통해 손실을 즉시 인식

phase 1 회계처리

장래기대이익 > 장래기대손실 : 순 기대손실이 "0"이면 원가 유지

phase 2 회계처리

손익 각각 인식; 단, 손실은 즉시 인식



2.3.1. IFRS 4 phase 2 자본



◆ 생명보험회사 자본은 23조로 감소하나 경제적 가치는 약 72조

- 대다수 회사의 유배당/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의 결손 발생으로 자본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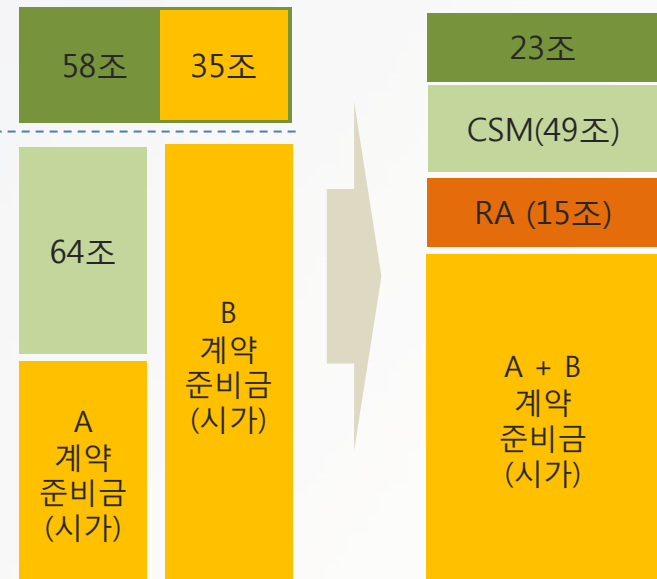
phase 1 (생명보험)

기대이익(64조) > 기대손실(35조) : 순 기대손실은 "0"로 원가 유지



phase 2 (생명보험)

손익 각각 인식; 35조 손실 즉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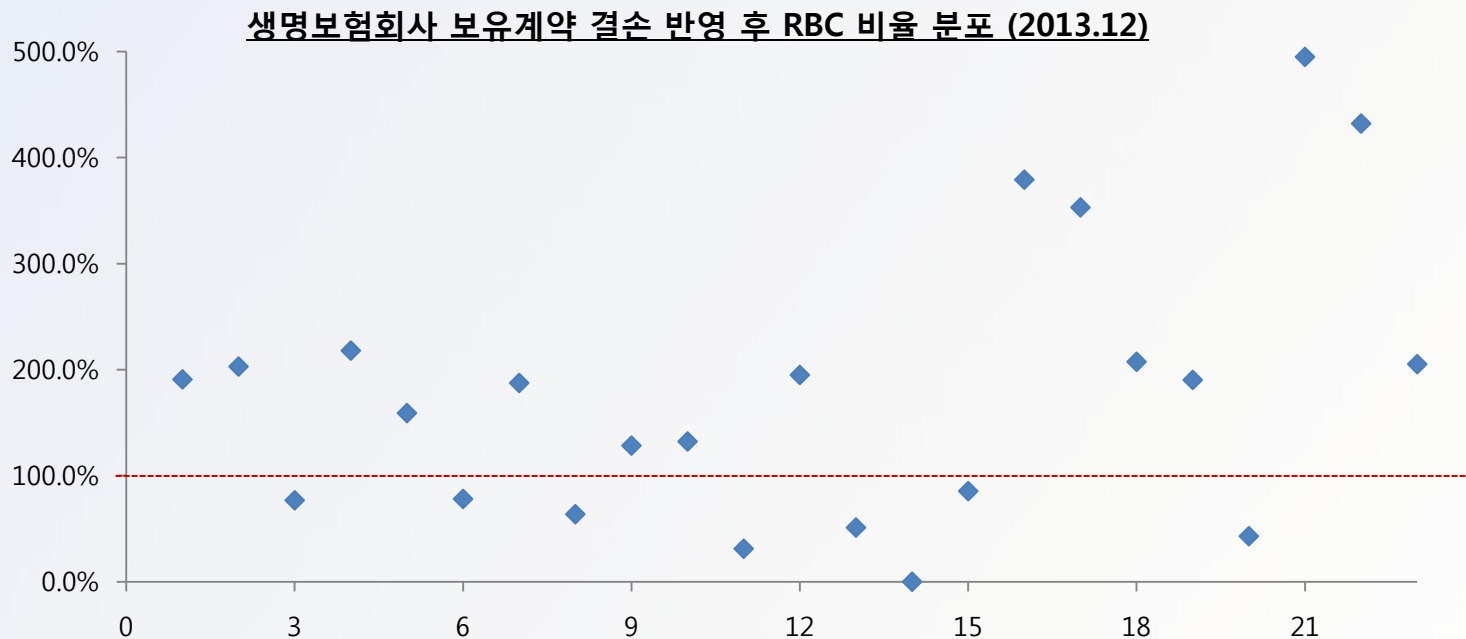
주 : 각 보험회사의 부채적정성평가(LAT)에 근거하고 있으며, 평균 할인율은 4.75% 전후 수준

자료 : 각 사 2013년 감사보고서

2.3.2. 보유계약 결손 반영 시 RBC 급락



- ◆ phase 2 자본(23조)만 가용자본으로 볼 경우 RBC비율은 급락
 - 8개 생명보험회사의 RBC 비율은 100% 이하로 하락
 - RBC 요구자본 강화를 고려하면 RBC 비율 100% 이하에 2~3개사 추가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보험연구원

2.4. phase 1 LAT 대응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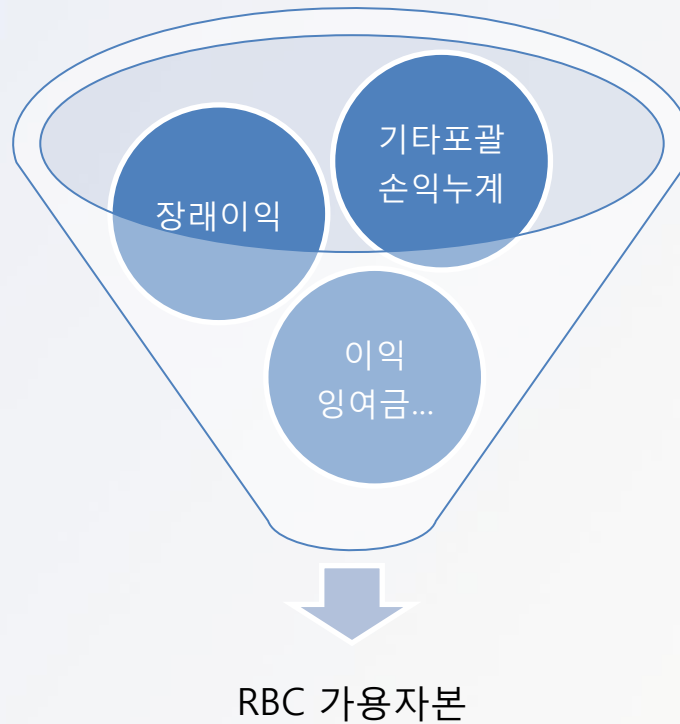


- ◆ LAT 단계적 강화는 준비금 증가, 즉 자본 확충을 요구
 - phase 1의 LAT 평가를 phase 2의 시가평가와 일치하도록 점진적 조정
 - 결손(35조) 인식, 할인율 하락 효과 등을 단계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예상

- ◆ 당기순익을 전액 내부유보 하더라도 기준 RBC 비율(100%)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험회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LAT 단계적 강화만으로는 phase 2 대응에 한계

- ◆ RBC 가용자본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Ⅲ. RBC 가용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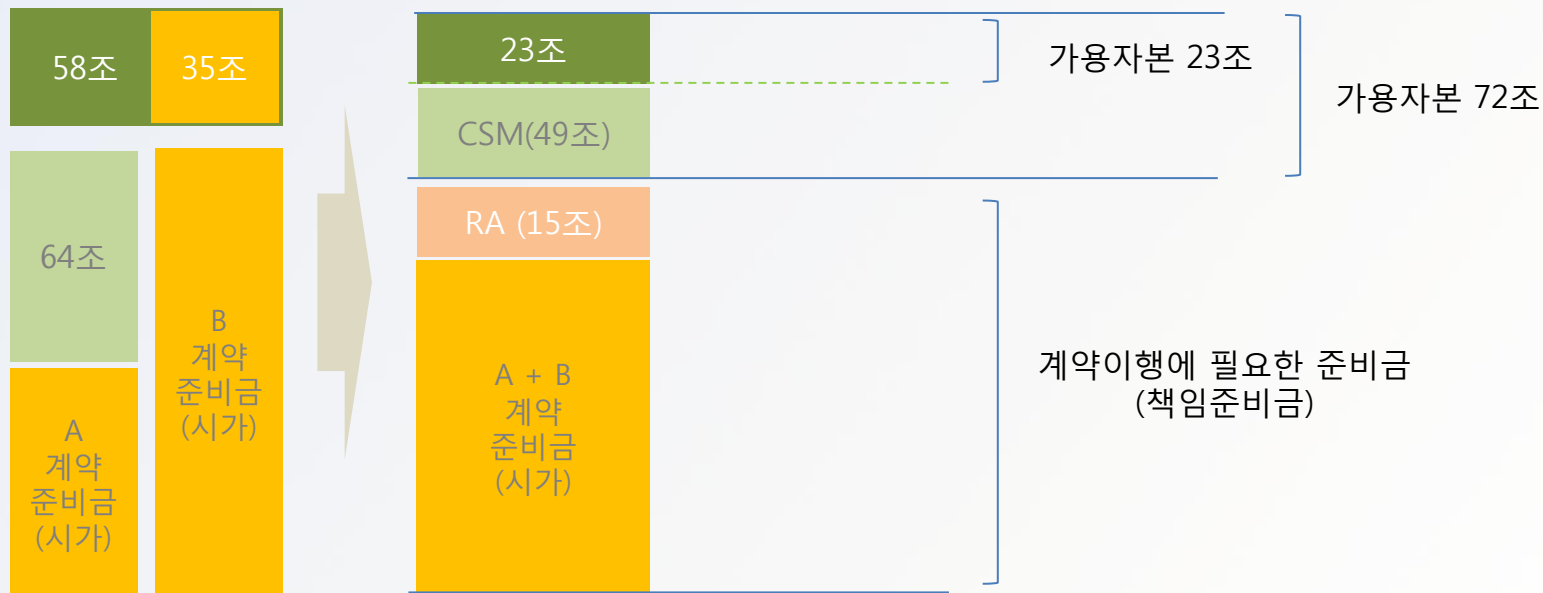


3.1. 경제적 자본과 RBC 가용자본



- ◆ Phase 2는 자본과 서비스마진이 보험회사의 경제적 자본임을 제시
 - 장래 이익은 장래 결손을 보전할 재원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이익과 결손 현금흐름의 시기상 불일치, 대량 해지 등을 고려해야 함

phase 2 (생명보험)



3.1.1. 해외 사례 : 장래이익의 가용자본 인정



◆ EU Solvency II

-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자는 데 대해서는 이의 없음
- 다만, 인정 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음
 - (1) 현재 계량영향평가에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
 - (2) 장래이익의 가용성 제약을 고려하여 보완자본으로 제한

◆ 보험부채 시가평가 보험시장 사례

- 영국은 장래 결손 보전 한도 내에서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으로 인정
- 캐나다, 호주 등도 장래이익의 가용성을 제한적으로 인정

3.2. 장래 이익 모두를 가용자본으로 인정



◆ 장래 이익을 모두 RBC 가용자본으로 인정

- 현재 할인율이 유지된다면 RBC 비율은 현행과 유사
- 생명보험회사 평균 RBC 비율 267%

* 가용자본 72조, RBC 요구자본 강화를 고려한 요구자본은 27조

◆ 그러나 자본의 가용성 기준에서 볼 때 장래 이익에는 일부 제약

- 이익과 결손 현금흐름의 시기상 불일치 존재
- 보유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하므로 대량 해지 시 장래 이익 소멸
- 보험회사의 대량해지위험을 모니터링할 필요
- 가용자본이 금리 수준에 크게 좌우되는 현상 심화

3.3. 장래이익의 일부만 가용자본으로 인정



◆ 장래 이익은 장래 결손을 한도로 가용자본으로 인정

- 현재 할인율이 유지된다면 RBC 비율은 다소 감소

- 생명보험회사 평균 RBC 비율 215%

- * 가용자본 58조, RBC 요구자본 강화를 고려한 요구자본은 27조

- 금리민감도 증대 문제 여전히 존재

◆ 장래이익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되, 자본의 질 제고 필요

- 장래 이익을 기본자본의 일정비율로 인정

- 인정 비율이 낮으면, 현재 할인율이 유지되더라도 RBC 비율 크게 감소

- (예: 인정비율 15%) 생명보험회사 평균 RBC 비율 약 100%

- * 가용자본 26.5조, RBC 요구자본 강화를 고려한 요구자본은 27조

IV. 보험부채 평가 할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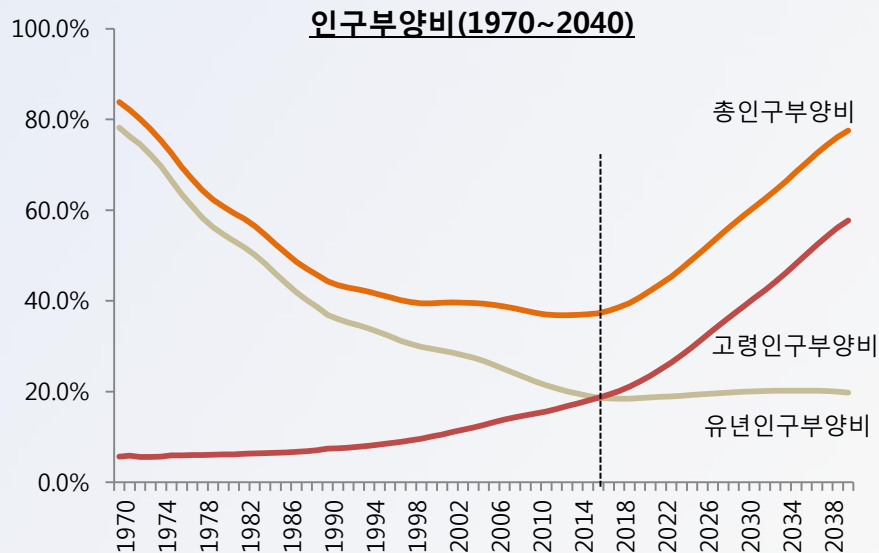


4.1. 저성장 · 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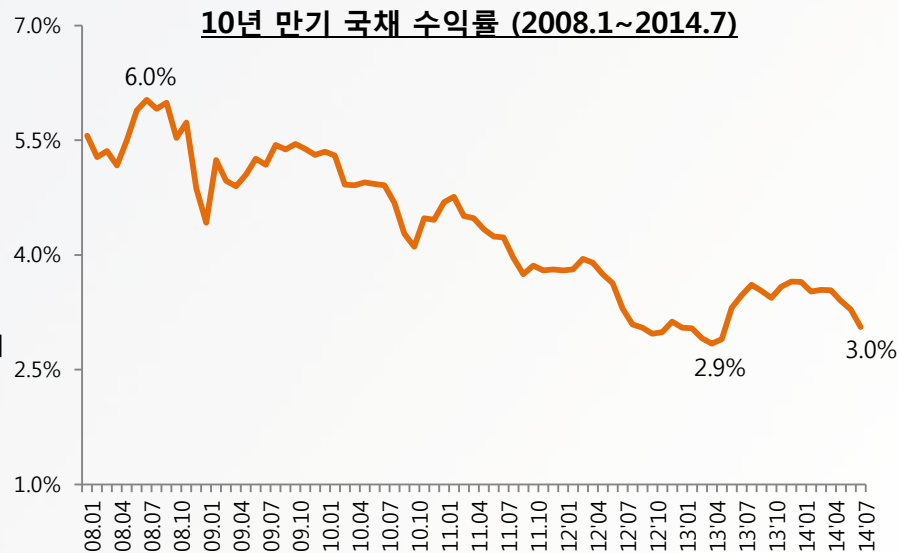


◆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성장을 둔화와 저금리 지속 전망

- 총 인구부양비는 2015년 이후 상승 추세로 반전
- 장기 시장금리 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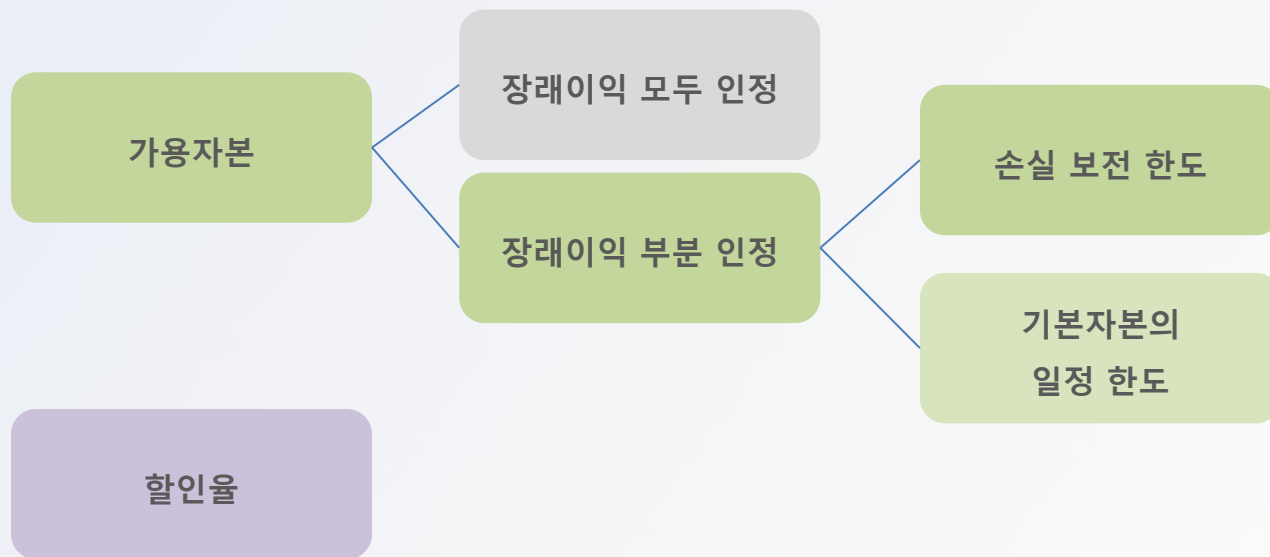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ECOS

4.2. 할인율 급락 대응



- ◆ 지금까지 논의는 2013년 LAT 할인율 수준(4.75% 내외) 유지를 전제
 - phase 2의 할인율 결정방식을 고려할 때, 할인율 수준은 낮아질 전망
 - 무위험수익률이 3% 이하로 하락하면 2018년 3.5% 시나리오도 가능
- ◆ 할인율이 3.5%로 하락 시 장래이익을 전부 가용자본으로 인정해도 5개 보험회사는 RBC 비율 100%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조재린외, 2014)
- ◆ 2018년 시행 시 할인율 급락에 대응한 감독조정수단을 마련할 필요
 - 할인율의 일시적인 급등락은 장기보험의 재무건전성을 왜곡
 - 향후에도 금융위기와 같은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장치로서 검토 필요

V. 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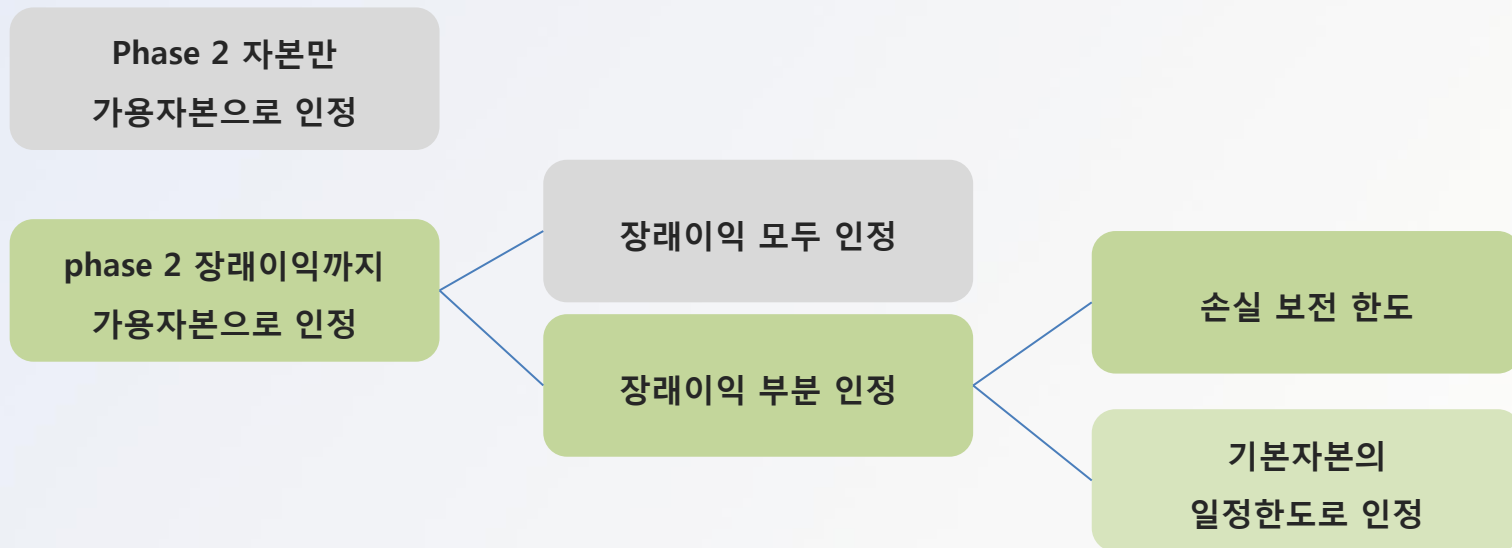


5.1. 정책 제언



◆ 장래 이익을 장래 결손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

- 점차적으로 장래 이익의 인정 기준을 기본자본의 일정 한도로 인정



◆ 할인율의 급락 효과를 고려한다면 별도의 감독수단이 필요

- phase 2 최초 (2018년) 적용 시 할인율 급락 가능성에도 대비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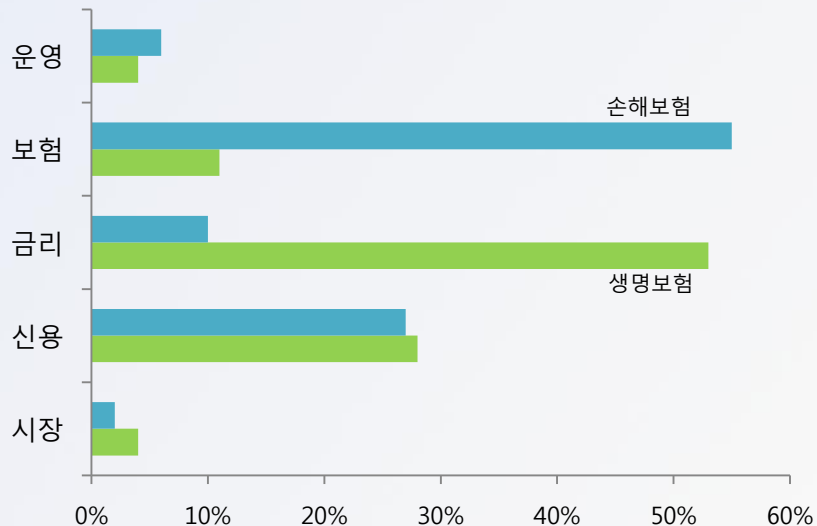
[참고 1.1] 보험회사 자기관리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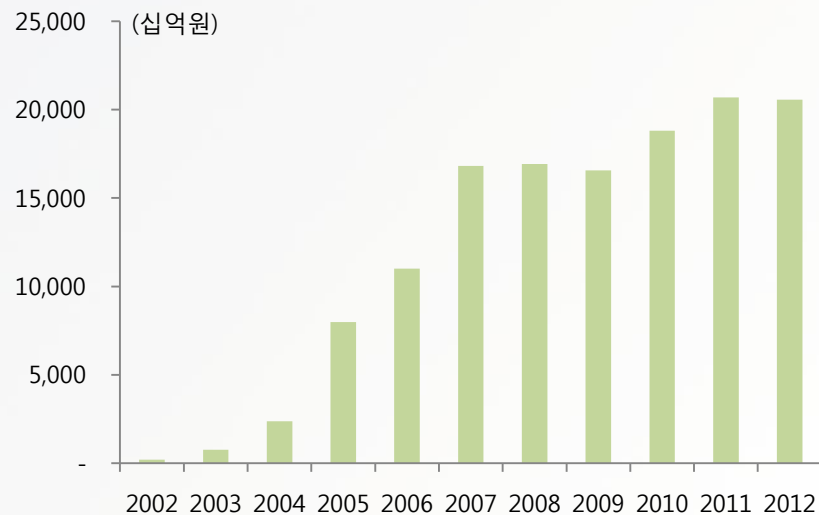
◆ 보험회사 요구자본 중 운영위험, 시장위험 비중 증가 예상

- 금융위기 이후 경영전략 및 위험관리 지배구조로 인한 운영위험에 초점
→ 급속한 성장, 자산/상품구성 급변 등은 모두 운영위험
- 저금리에 따라 변액보험이 제공하는 최저보증비용 증가

국내 보험회사 요구자본 구성



변액보험 매출 증가 추이 (2002~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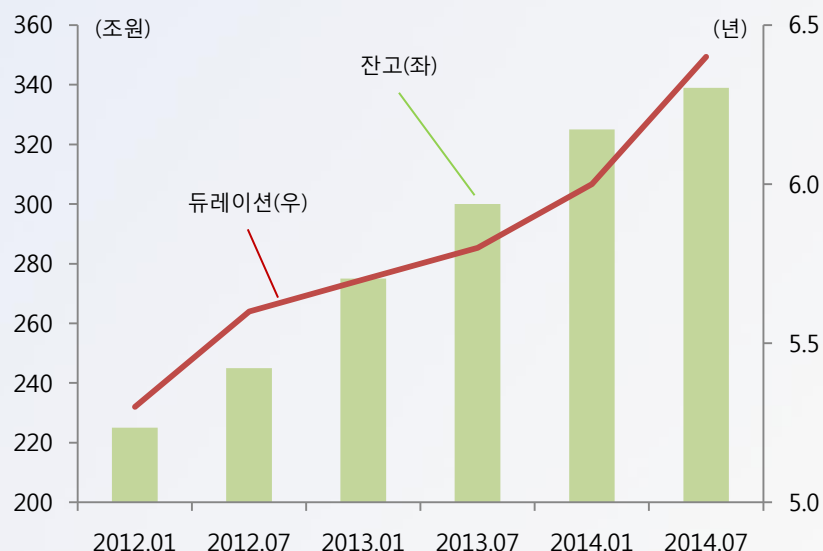


[참고 1.2] 금리위험 관리 필요성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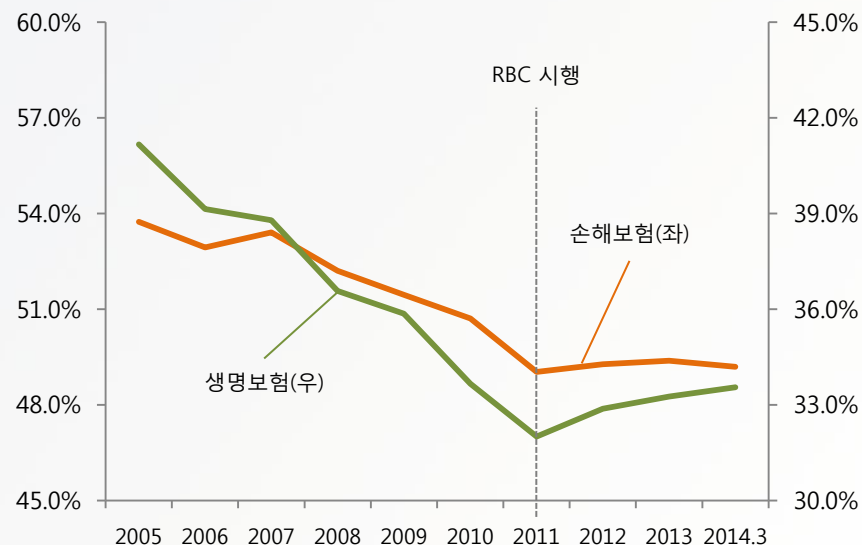
◆ 자산-부채 불일치 위험의 비중 : 여전히 크지만 더 낮추기는 힘든

- 자산 듀레이션 확대로 금리위험 축소 필요 : 장기자산 보유 확대
- 저금리에 따른 위험자산 투자 확대 필요 : 자산 듀레이션 확대의 한계

보험회사 보유 채권 듀레이션 (2012~2014)



보험회사 위험가중자산비율(2005~2014.3)



[참고 1.3]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변천



◆ 경쟁 촉진과 보험서비스이행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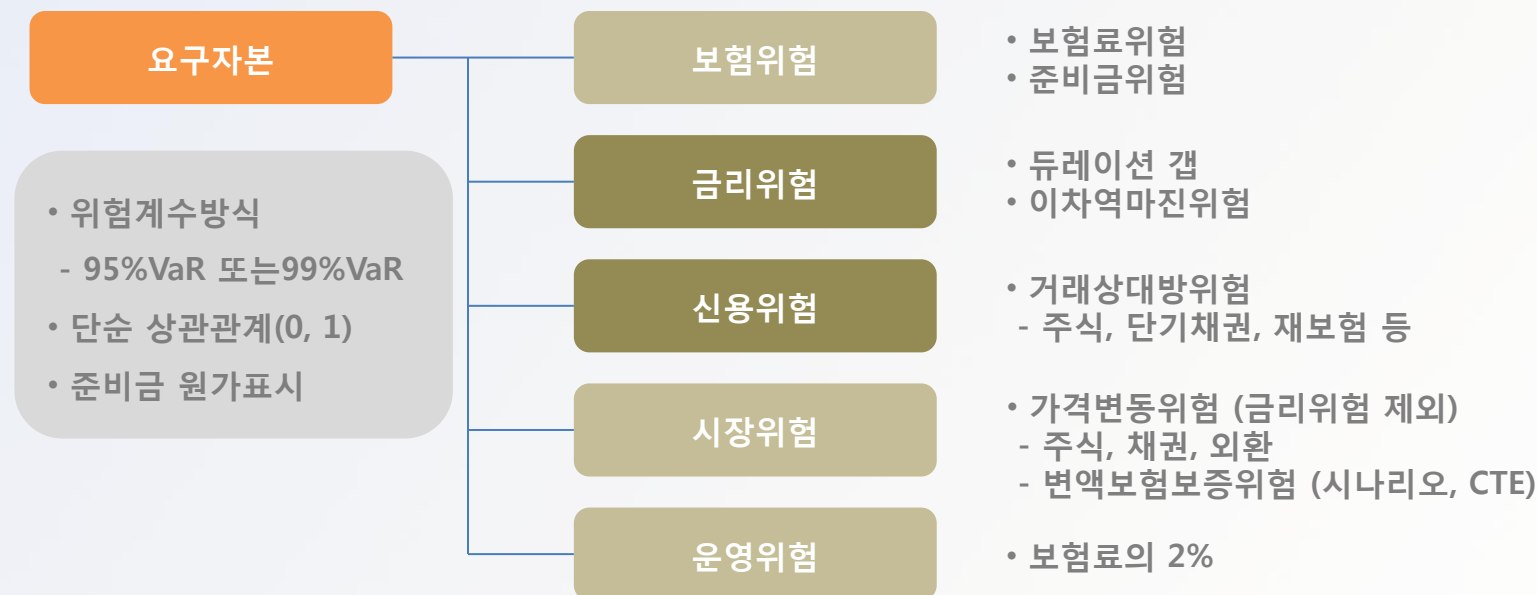
- 외환위기 이후 EU식 지급여력제도, 금융위기 이후 RBC제도 시행 및 강화

1997	• 가격자유화 단계별 추진
1999	•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을 사전적립식 예금자보호제도에 통합 • EU식 지급여력규제 시행
2000	• 표준이율/표준책임준비금제도 시행
2009	• RBC 시범운영 (EU식 지급여력제도와 병행)
2011	• IFRS 전면 채택 : 보험회계기준(IFRS 4 phase 1) - 기존관행 인정, 단 부채적정성평가(LAT) 요구 • RBC 시행
2012	• RBC 강화 플랜 제시 (2012.10)
2013	• IMF FSAP (5년마다 재평가)
2014	•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로드맵 (2014.3.20 시안 발표, 2014.7.31 확정)

[참고 1.4] 국내 RBC제도 현황

◆ 위험을 세분화하고 측정을 정교화하는 방식으로 강화 플랜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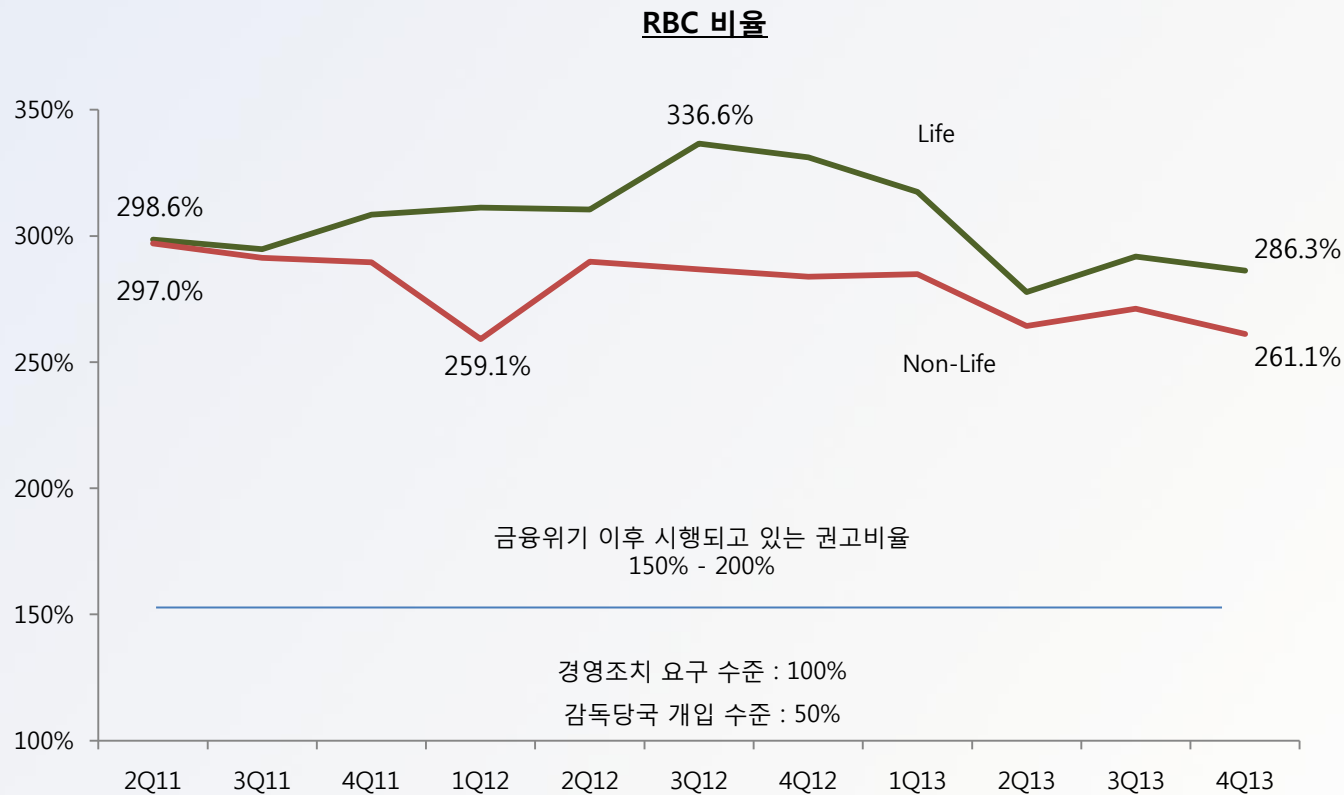
- 보험회사 노출 위험을 보험, 금리(ALM), 신용, 시장, 운영의 5가지로 구분
- 95%VaR 또는 99%VaR로 도출된 표준위험계수 적용(변액보험에는 CTE)
- 총 요구자본 산출 시 단순 상관관계를 적용



[참고 1.5] 국내 RBC 비율 현황



◆ 산업 평균 RBC비율, 생명보험은 286.3%, 손해보험은 261.1%



[참고 2.1] 보유계약에 대한 phase 2 적용

◆ 손실이 예상되는 보유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손실을 즉시 인식

- 보험료(연납)의 기대현가 900, 위험조정 30, 기대비용(시나리오 1, 2)
 (시나리오1) 기대보험금 600, 신계약비 120 (직접신계약비 90, 간접신계약비 30)
 (시나리오2) 기대보험금 900, 신계약비 120 (직접신계약비 90, 간접신계약비 30) →
- 보험증권 최초 발행 직후 1차년도 보험료 300 수취하여 신계약비 120 지급
- 손실계약(onerous contracts)
 - 손실은 즉시 인식
 • CSM: 보장기간에 걸쳐 인식

보험회사	장래 이익 예상 보유계약		장래 손실 예상 보유계약	
	최초발행시점	발행 직후 1차 보험료 수취	최초발행시점	발행 직후 1차 보험료 수취
현금유출현가	690	600	990	900
현금유입현가	(900)	(600)	(900)	(600)
위험조정(RA)	30	30	30	30
이행현금흐름	(180)	30	120	330
서비스마진(CSM)	180	180	0	0
보험부채	0	210	120	330
최초인식시점 손실		0		(120)
간접신계약비		(30)		(30)
당기 손익		(30)		(150)

자료 : IASB(2013) 예시

[참고 2.2] 생명보험회사 LAT 평가 결과



Y : LAT 평가결과 결손 발생, N : LAT 평가결과 잉여 발생

2013.12	유배당		무배당	
	금리확정	금리연동	금리확정	금리연동
A	Y	Y	Y	N
B	Y	Y	Y	N
C	Y	N	Y	N
D	Y	N	N	N
E	Y	N	N	N
F	Y	Y	N	N
G	Y	Y	N	N
H	na	na	na	na
I	na	na	na	na
J	na	na	na	na
K	Y	N	Y	N
L	N	N	N	N
M	Y	N	N	N
N	Y	Y	Y	N
O	Y	Y	N	Y
P	Y	N	N	N
Q	Y	N	Y	N
R	N	N	Y	Y
S	N	N	N	Y
T	Y	N	Y	N
U	N	N	N	N
V	N	Y	N	N
W	N	N	N	N

주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장기손해보험의 LAT 결손 여부 정보 공시가 불충분하여 다루지 않음.

자료 : 각 사 2013년 감사보고서

[참고 4.1] 저금리와 금리역마진

◆ 투자수익률과 실질 부담이율 간 마진 축소

- (금리확정형) 계속보험료 유입으로 준비금 증가, 재투자수익률 하락
- (금리연동형) 저성장에 따른 신계약 증가율 둔화
- (장기손해보험) 위험보험료에 적용된 확정금리로 역마진위험에 노출

